2018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등

폐기물관리법 주요 개정 내용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Contents]

1.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2. 자원순환 인정제도

3. 폐기물 처분부담금제도

PART 01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1. 배경 및 경과
2.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3.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사례
4. 질의회신

1. 배경 및 경과

◆ 유해폐기물 취급 과정에서 화재, 폭발 및 유독가스 발생 등 사고 빈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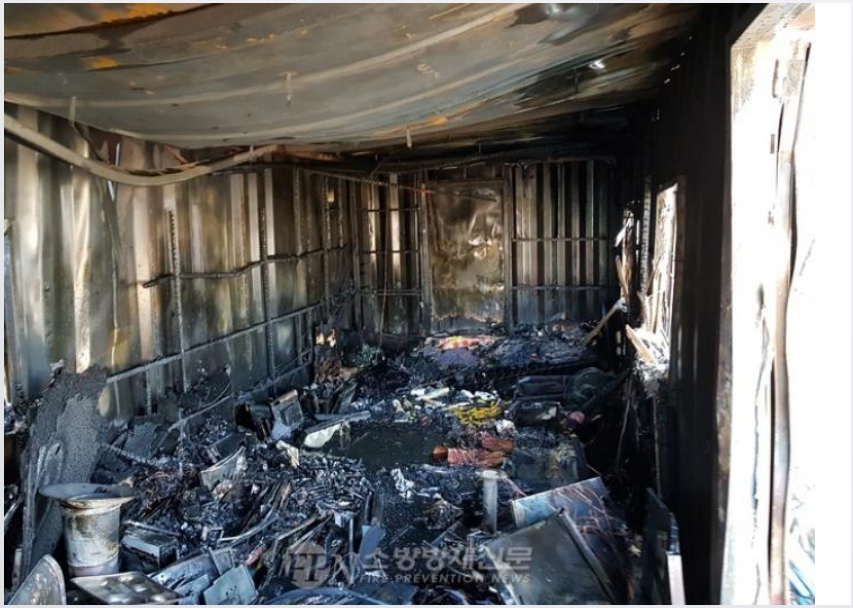
-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다른 물질(폐기물)과의 반응 등으로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하나, 처리업체는 수탁받은 폐기물에 대한 세부정보 부족

◆ 배출자의 폐기물 유해성 정보 작성 의무화 제도 도입('17.4.18)

-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제도 시행('18.4.19)**
  * 미국(Waste Profile Sheet), 일본((Waste Data Sheet) 등 에서도 폐기물 유해 정보를 처리자에게 제공토록 하는 제도를 기 운영 중

* 사고사례

일시	장소	보도내용
2018.01.10	울산	송정동 폐기물 화재
2017.12.19	서산	알루미늄 폐기물서 큰 불
2017.12.05	청주	폐기물처리업체 큰 불 6600만원 피해
2017.11.8	파주	파주 폐기물처리장 화재
2017.10.20	군위	군위공단 업체서 폐황산 화합물 100리터 유출...
2017.08.26	김해	폐기물 공장서 불 1800만원 피해





2.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2.1 작성대상

- 지정폐기물,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우려 폐기물*(환경부 고시 2016-46)

*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우려 폐기물

1. 폐기물 세부분류번호 51-12-01 폐석고(폐인산석고, 폐황산석고)
2. 폐기물 세부분류번호 51-12-02 폐석회(생석회 CaO)
3. 무기성 공정오니(유리식각 잔재물이 포함된 경우)
4. 무기성 공정오니(보오크사이트가 포함된 경우)
5. 금속성 분진·분말(알루미늄, 구리화합물, 카보닐철, 마그네슘, 아연이 포함된 경우)

2.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2.2 작성내용

1. 제공자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 담당자), 사업자 주소 등
2. 폐기물정보 – 사업장 폐기물 종류 및 포장형태, 발생량, 제조공정
3. 안정성 · 반응성 – 폭발성, 인화성 등 해당폐기물의 유해특성
4. 물리 · 화학적성질 – 성상 및 색, 악취, 수분, 비중, pH, 끓는점, 녹는점 등
5. 성분정보 – 용출독성, 유해물질·함량, 수분과 접촉시 화재폭발, 독성가스 발생 우려 성분
6. 취급시 주의사항 – 보호구, 저장·보관방법
7. 특별주의사항 및 그 외의 정보

2.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2.3 작성방법

- **단일폐기물**은 **배출자가 스스로 작성**(원칙), 어려운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 작성
- **혼합폐기물**은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재활용 환경성 평가기관)**에 의뢰,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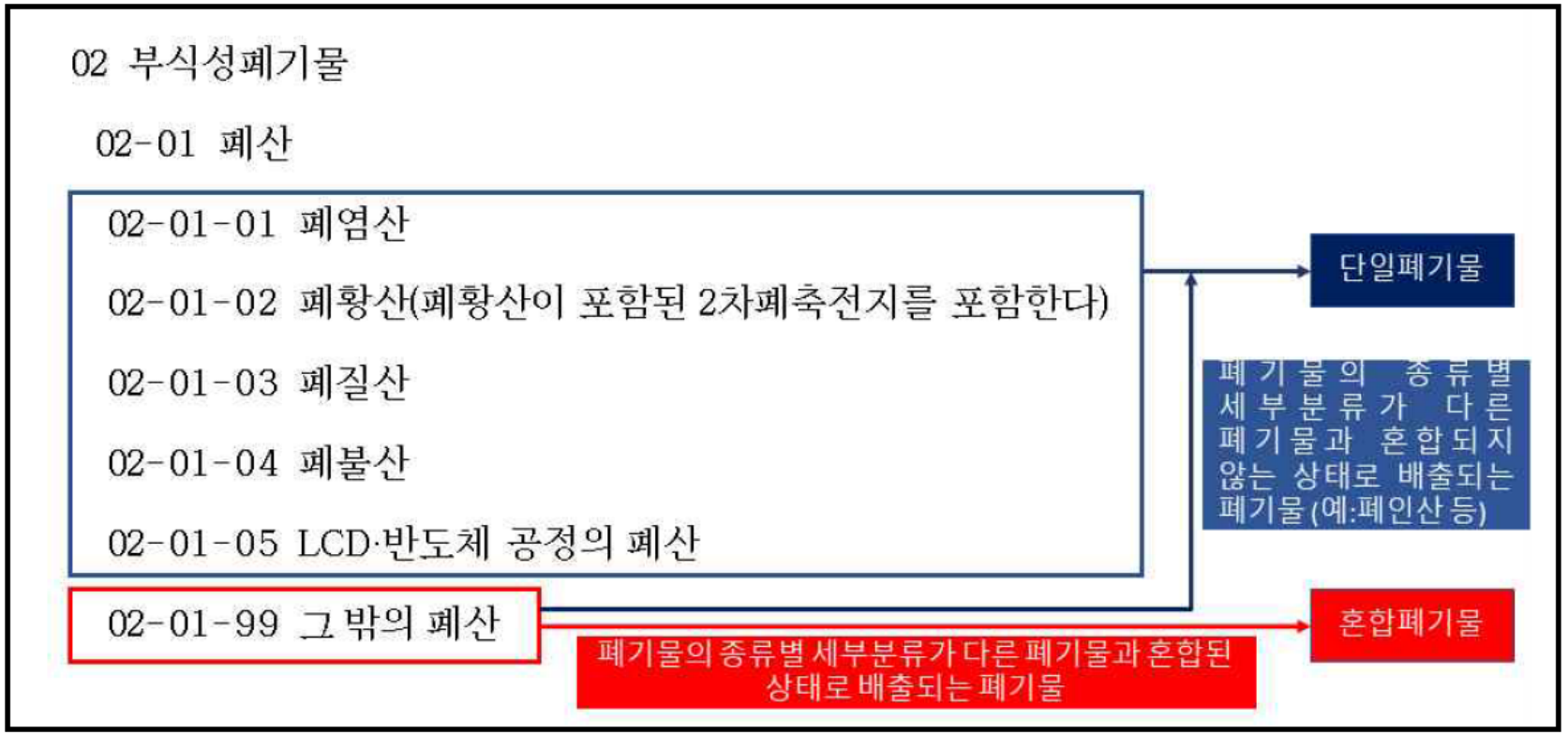
* 단일폐기물 구분

1. 혼합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단일폐기물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 단일폐기물**

   단, 별표 4에 따라 구분되지 않은 "**그 밖의 00**"의 경우 **폐기물의 성상이 한 가지로 명확한 경우에만 단일폐기물**

2.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 단일폐기물 구분 예시



2.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 혼합폐기물 구분(전문기관 의뢰 작성)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종류별 세부분류가 다른 폐기물과 혼합된 상태로 배출된 경우**로

   - 별표 4에 따른 두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각각 발생하게 되고, 처리방법, 처리업체 등이 동일하여 폐기물의 종류가 다른 폐기물을 혼합하여 배출하는 경우

   ex) 폐염산(02-01-01)과 그 밖의 폐산(02-01-99)이 발생하나, 처리업자와 처리방법이 동일하여 혼합하여 배출하는 경우 혼합폐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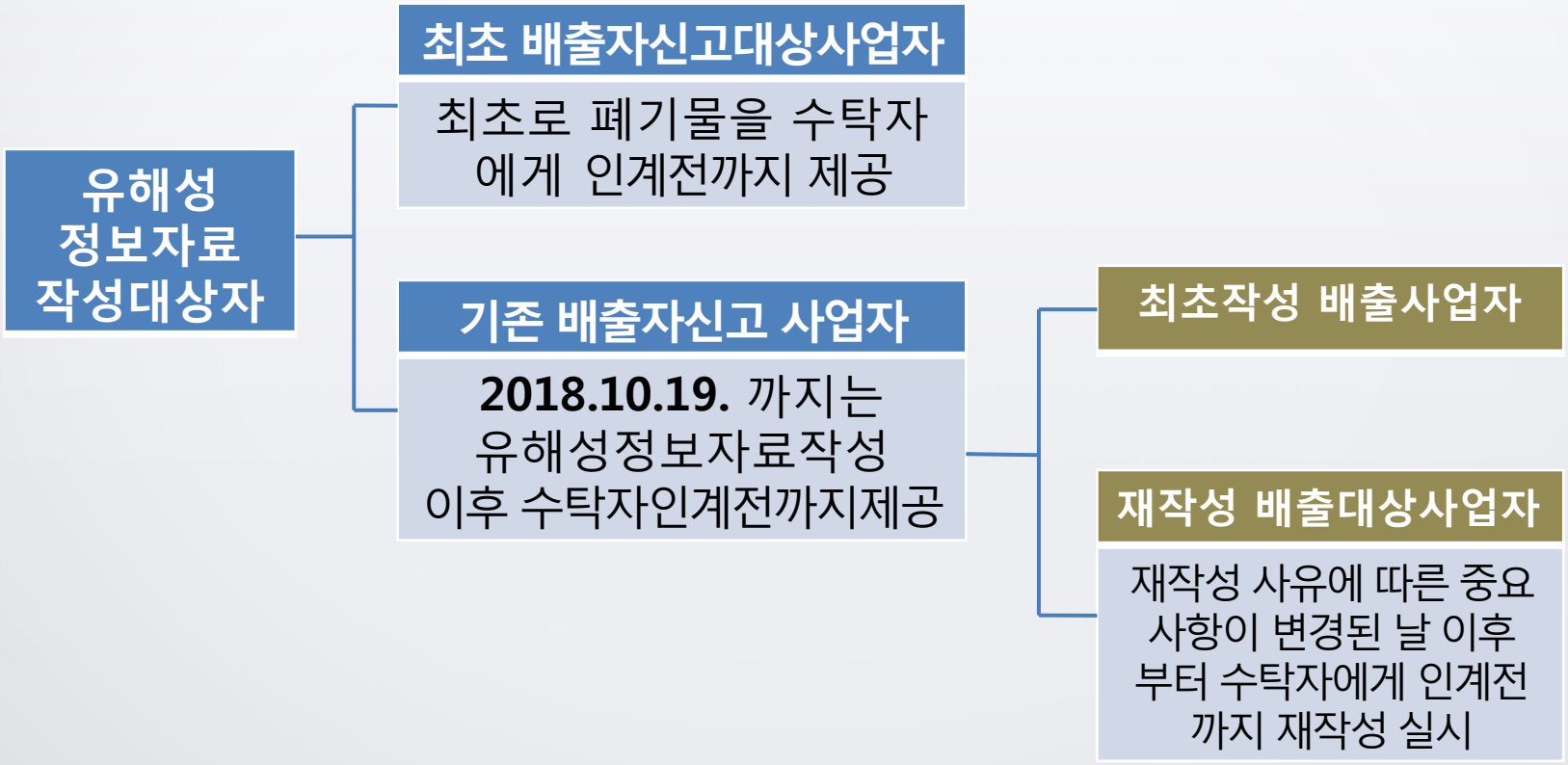
   ex) 폐염산 + 폐질산 혼합된 상태로 배출

2. 세부분류가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01-01-99), 그 밖의 공정오니(01-02-99), 그 밖의 폐농약(01-03-99), 그 밖의 폐산(02-01-99)~~그 밖의 폐유독물질(09-03-00)는 두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경우

   단, 단일폐기물로 분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만 단일폐기물 임

2.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2.4 작성 대상자 및 작성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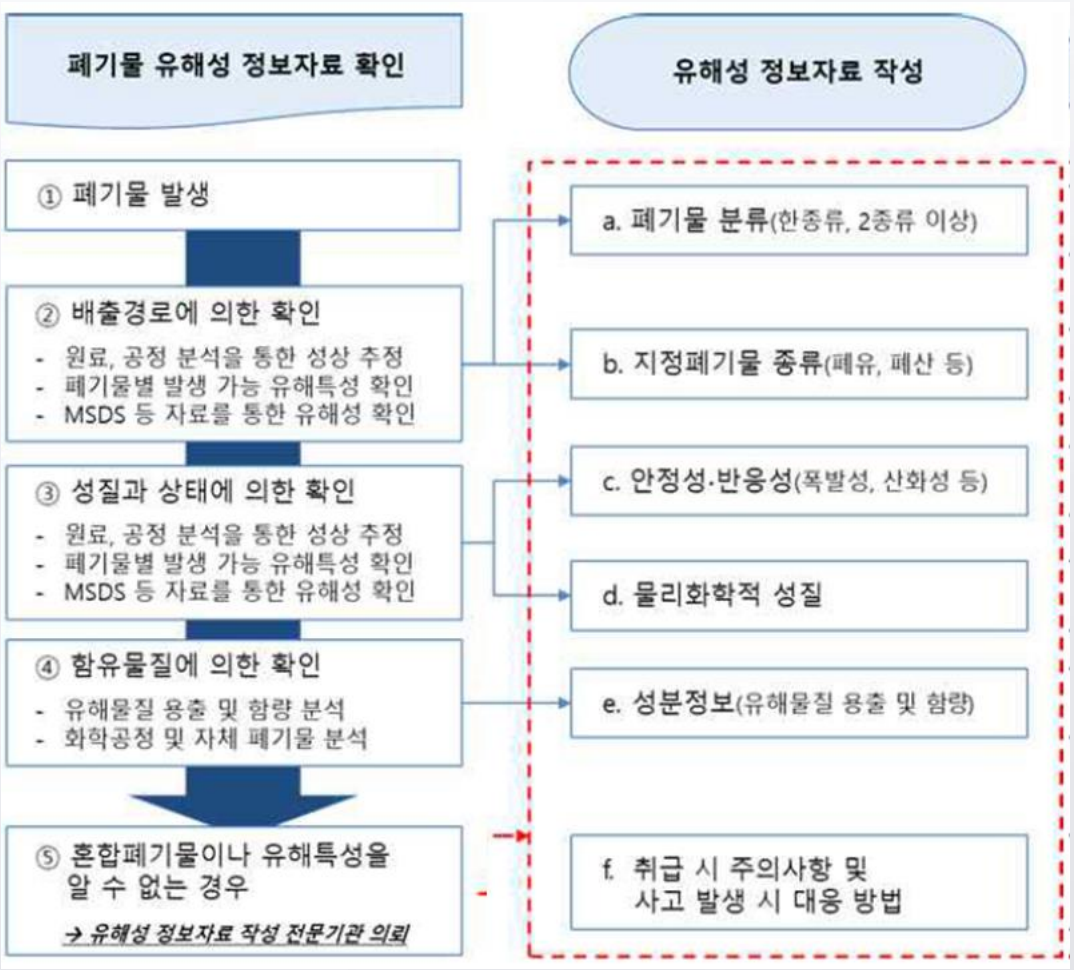
- **재작성은 생산공정, 사용원료 변경, 그외 이유로 폐기물의 종류, 성상이 변경되는 경우**

2.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2.5 대상폐기물의 유해성 정보 확인방법

- 폐기물의 종류, 사용원료 및 발생공정, MSDS, 폐기물분석결과서 등을 활용하여 폐기물의 유해성 정보를 확인

  - 처리계획확인서, 부속서류(분석결과, 공정도, 폐기물 종류, 발생량) 참조



2.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2.6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방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작성
- 폐기물의 성상, 원료 등이 바뀌지 않는 경우에만 기존에 제출했던 유해물질분석 결과서 활용, 공정변경, 원료변경으로 폐기물의 성상이 바뀐 경우 재확인 후 작성

* 작성원칙

1. 충실하게 작성, 관련자료가 없는 경우 “자료없음”, “없음’으로 기재
2. 하나의 공정에서 여러 종류의 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 폐기물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에 따라 폐기물유해성정보자료 각각 작성
3. 유해특성, 시간에 따른 폐기물의 변화, 물리화학적 성질, 성분정보(용출독성, 함량부분) 등에 분석결과서, MSDS, 관련문헌 등 관련자료를 활용하여 기재

2.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 위반시 벌칙

대상	위반사항	제재의 정도
폐기물 처리업자	· 유해성 정보자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또는 6개월 내 영업정지
배출자	·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경우(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의뢰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	과태료 각 1천만원 이하
	·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 중요사항이 변경된 후에도 유해성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경우(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의뢰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	과태료 300만원 이하
	· 중요사항이 변경된 후 다시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 유해성 정보자료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3. 작성 사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4서식]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확인필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3쪽 중 제1쪽)

① 관리번호SY-2018-02(자체번호)		② 작성일(제공일) 2018.10.20
제공자	③ 상호(명칭) XX케미칼	④ 사업자등록번호 214-86-XXXXX
	⑤ 성명(대표자) 홍길동	⑥ 성명(담당자) 한석봉
	⑦ 주소(사업장) 경기도 00시 00구 00(배출사업장기준으로 작성) (전화번호:031-000-0000) (팩스번호:031-000-0000)	

폐기물정보	⑧ 폐기물	폐기물 종류 그 밖의 폐유기용제	폐기물 분류번호 (04 - 02 - 00)
		[√]단일 폐기물 [ ]혼합 폐기물	
	⑨ 포장형태	[ ]용기(재질:) [ ]톤백 [√] 차량직접적재 [ ]기타( )	
	⑩ 발생량(톤/년)	10ton/yr	
	⑪ 제조공정	혼합 → 코팅(폐유기용제 배출) → 응고 → 건조 → 연마 → 검사 → 출고	

		항목	조사 방법	유해특성 정보	비고
안정성·반응성	⑫ 유해특성	폭발성	[ ]분석 [√]자료(MSDS)	원료 물질들의 MSDS를 참고로 작성	
		인화성	[ ]분석 [√]자료(MSDS)	인화점 63℃	
		자연발화성	[ ]분석 [ ]자료( )	없음	
		금수성	[ ]분석 [ ]자료( )	없음	
		산화성	[ ]분석 [√]자료(MSDS)	원료 물질들의 MSDS를 참고로 작성	
		부식성	[ ]분석 [ ]자료( )	없음	
		기타	[ ]분석 [ ]자료( )	없음	

⑬ 물리적·화학적 성질	성상 및 색	액체, 무색	악취	방향족화합물 냄새
	수분(%)	15.18	비중	0.95
	수소이온농도(pH)	6.7	끓는점(℃)	153
	녹는점(℃)	-6.5	발열량	17,200 kcal/kg
	점도	0.802	시간에 따른 폐기물의 성상 등의 변화	없음
	기타			

210mm×29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제3쪽 중 제2쪽)

	항목	조사 방법	주요 성분	비고
성분정보	⑭ 유해물질 용출독성	[ ]분석 [ ]자료( )	자료없음	
	⑮ 유해물질 함량	[ ]분석 [√]자료(문헌)	Pb : 2.47 mg/kg Cr : 1.26 mg/kg Zn : 74.47 mg/kg	
	⑯ 수분 등과 접촉 시 화재·폭발 또는 독성가스 발생 우려 성분	[ ]분석 [ ]자료( )	없음	

⑰ 취급 시 주의사항	안전대책	보호구	[√]마스크 [√]장갑 [√]보호안경 [√]기타(보호의)
	저장 및 보관방법		- 용기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단단히 밀폐하여 저장하시오. - 서늘한곳에 보관하시오 - 빈 드럼통은 완전히 배수하고 적절히 막아 즉시 드럼 조절기에 취출력 놓거나 적절히 배치하시오. - 취발되지 않도록 밀폐형 용기에 보관하시오 - 흘러나올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용기에 보관하고 혼합이나 유동으로 생기는 위험이 없도록 수집,보관한다.
⑱ 사고 발생시 방제 등 조치방법	이상조치	응급조치	- 피부에 접촉 시 즉시 오염된 의복을 벗기고 다량의 물과 비누로 오염물이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씻어낼 것 - 물질을 먹거나 흡입하였을 경우 구강대구강법으로 인공호흡을 하지 말고 적절한 호흡의료장비를 이용하시오
		누설대책	- 흡수제를 사용하여 적합한 용기에 수거할 것. - 누출지역을 적어도 반경 50-100m 까지 차단시킬것 - 누출물이 토양, 수계 또는 하수시설에 유입되지 않도록 할 것 - 모든 점화원을 제거할 것
		화재시의 조치	- 이산화탄소 또는 건조분말 소화기로 소화 - 진화가 된 후에도 상당기간동안 물분무로 용기를 냉각시키고 가능한 멀리 떨어져서 뿌릴 것. - 증기의 흡입을 피하고 바람을 등지고 설것.
	악품, 장비 및 방제요령		- 구조자는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지역을 벗어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소화하시오 - 소화수의 처분을 위해 도랑을 파서 가두고 물질이 흘어지지 않게 하시오

⑲ 특별 주의사항	- 고 인화성이므로 열, 스파크, 화염 등으로 화재·폭발 등에 주의 -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 자극 - 취급 또는 작업시는 통풍이 잘 되는 후드에서 행할 것 - 증기의 누설을 피하고 점화원으로부터 분리시킬 것

⑳ 그 외의 정보	- 고 인화성이므로 열, 스파크, 화염 등으로 화재·폭발 등에 주의	- 폐기물 주요성상 : 크레졸, 나이트로벤젠, 이소부탄올, 피리딘 등	배출업종코드 : 202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3. 작성 사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4서식]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확인필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3쪽 중 제1쪽)

① 관리번호SY-2018-02(자체번호)		② 작성일(제공일) 2018.10.20
제공자	③ 상호(명칭) XX케미칼	④ 사업자등록번호 214-86-XXXXX
	⑤ 성명(대표자) 홍길동	⑥ 성명(담당자) 한석봉
	⑦ 주소(사업장) 경기도 00시 00구 00(배출사업장기준으로 작성) (전화번호:031-000-0000) (팩스번호:031-000-0000)	
폐기물정보	⑧ 폐기물	폐기물 종류 그 밖의 폐유기용제 / 폐기물 분류번호 (04 - 02 - 00) [√]단일 폐기물 [ ]혼합 폐기물
	⑨ 포장형태	[ ]용기(재질:) [ ]톤백 [√] 차량직접적재 [ ]기타( )
	⑩ 발생량(톤/년)	10ton/yr
	⑪ 제조공정	혼합 → 코팅(폐유기용제 배출) → 응고 → 건조 → 연마 → 검사 → 출고

3. 작성 사례

		항목	조사 방법	유해특성 정보	비고
안정성 · 반응성	⑫ 유해특성	폭발성	[ ]분석 [√]자료(MSDS)	원료 물질들의 MSDS를 참고로 작성	
		인화성	[ ]분석 [√]자료(MSDS)	인화점 63℃	
		자연발화성	[ ]분석 [ ]자료( )	없음	
		금수성	[ ]분석 [ ]자료( )	없음	
		산화성	[ ]분석 [√]자료(MSDS)	원료 물질들의 MSDS를 참고로 작성	
		부식성	[ ]분석 [ ]자료( )	없음	
		기타	[ ]분석 [ ]자료( )	없음	

⑬ 물리적 · 화학적 성질	성상 및 색	액체, 무색	악취	방향족화합물 냄새
	수분(%)	15.18	비중	0.95
	수소이온농도(pH)	6.7	끓는점(℃)	153
	녹는점(℃)	-6.5	발열량	17,200 kcal/kg
	점도	0.802	시간에 따른 폐기물의 성상 등의 변화	없음
	기타			

210㎜×297㎜[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4. 질의 회신

◆ 가이드 1-24

Q) 어떤 경우에 반드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하여야 하나요 ?

A)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별표4)에 따라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가 다른 폐기물과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

◆ 가이드 2-2

Q) 단일 폐기물은 어떤 폐기물인가요 ?

A) 혼합되지 않은 폐기물,

- 별표4에 따라 종류별 세부분류 코드가 있는 폐기물
- 단, 폐기물의 구분이 세부분류 코드에 없어 그 밖의 폐기물로 구분되었으나, 해당 폐기물의 성상이 한가지로 되어 있다면 단일 폐기물
- 여러 물질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혼합폐기물로 분류

4. 질의 회신

◆ 가이드 2-3

Q) 단일 폐기물과 혼합 폐기물의 구분은 ?

A) 첫째, 폐기물의 처리자와 처리방법이 동일하여 A폐기물과 B폐기물을 혼합 보관하고 위탁하는 경우에는 A+B폐기물은 혼합폐기물로 간주
단, 배출자가 A폐기물과 B폐기물을 따로 보관 배출하는 경우 단일 폐기물임

둘째, 별표4에 따라 종류별 세부분류 코드가 있는 경우 단일 폐기물임
단, 폐기물이 세부분류 코드가 없어 그 밖의 폐기물로 구분되었으나, 폐기물의 성상이 한가지로 되어있다면 단일폐기물, 여러 물질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혼합폐기물로 분류

4. 질의 회신

◆ 가이드 2-21

Q) 유해정보 작성시 기업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는데 일부 생략해도 되는지 ?

A) 기업비밀이 유출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작성하되, 사고발생, 환경, 인명피해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유해특성정보인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

◆ 가이드 2-27, 28

Q) 원료가 다양하고, 불규칙하여 유해정보작성이 어려운데 이런 경우 매번 작성하여 처리자에게 정보제공을 해야하는지 ?

A) 폐기물의 종류가 매번 변경되는 유해성정보자료도 다시 작성 다만,

- 사용 원료의 변경에 따른 농도(함량) 변화의 사유로 다시 작성 할 필요 없음
- <u>유해특성이 변경되었다고 판단되면 다시 작성</u>
- 다양한 원료, 사용량을 고려하여 최대한 모든 성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

4. 질의 회신

◆ 2-34

Q) 염산에 물이 혼합되어 폐염산을 배출하는 경우 유해성정보자료 작성하는지 ?

A) 폐기물의 주요 구성성분을 알고, 폐기물이 물과 혼합되는 경우 원료물질의 MSDS 등을 참조하여 작성

◆ 2-46

Q) 오일필터, 기름걸레 등 폐유 고상을 배출하는 경우 유해특성을 어떻게 ?

A) 오일에 대한 유해특성을 작성, 기름의 유해특성을 작성

◆ 3-3

Q) 유해성정보자료는 어떻게 제공하여야 하나요 ?

A) 서면(문서)으로 수탁자에게 제공



PART 02

순환자원 인정제도 소개

1. 배경 및 경과
2. 주요내용
3. 순환자원 인정절차 및 혜택

1. 배경 및 경과

◆ 도입배경

- 폐기물 재활용업체의 증가로 **재활용제품이 매년 증가 추세**
- 폐지, 고철, 폐유리 등 **원료로 사용이 가능한 제품을 재활용 과정에서 방치 우려, 유해성 등의 사유로 폐기물로 분류**하여**「폐기물관리법」규제 적용**
- **일정기준을 충족한 폐기물**을 폐기물 관련규제를 받지 않는**"자원"으로 인정**하여 재활용 산업의 법적 안정성 증진 및 안전한 2차 원자재 확보에 기여

◆ 추진경과

- 순환자원 인정제 운영방안 마련 연구용역*(환경부, '14.12~'17.12)
- 「자원순환기본법」 제정·공포('16.5.29) 및 하위법령 제정(~ '17.12.29)
- 순환자원인정제도 시범사업 실시('17.7~10) 및 시행('18.1.1)

2-1. 주요내용

◆ (인정 신청자)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재활용업자, 고물상 등

* '18년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 2,000여개 사업장이 신청할 것으로 추산

◆ (인정기준) 환경 非유해성, 경제성 및 그 밖의 기준을 충족 시

[자원순환기본법 제9조제1항]

1.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을 것

(지정폐기물, 수출입 규제폐기물, 유해물질 기준치 이상이 아닐 것)

2.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우려가 없을 것

(재활용 가능, 유가성 있을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시행령 제5조)으로 정하는 순환자원의 기준을 충족할 것

2-2. 주요내용(인정기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5조]

① **고체상태 폐기물일 것**(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오니류 및 동물성잔재물은 제외)

②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고, 이물질 포함되지 아니할 것**
(이물질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그 기준을 충족)

③ **추가적인 가공 과정 없이 바로 제품 제조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에너지회수 활동이나 소각시설 연료 사용, 성토재·복토재·도로의 기층재나 보조기층재, 채움재로 사용하는 경우 제외)

④ **유기성 폐기물은 사료, 비료, 목재제품, 활성탄 및 흑연 관련제품 제조의 원료나 재료, 비료로 직접 사용하거나 농업활동 사용용도로만 사용할 것**

2-3. 주요내용(인정기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5조]

⑤ 제품 제조의 원료나 재료 등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할 것

※ 폐기물 ⇒ 중간가공 ⇒ 제품제조 원료·재료로 사용(미인정)

※ 폐기물 ⇒ 제품제조 원료·재료로 사용(인정)

⑥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용도로만 사용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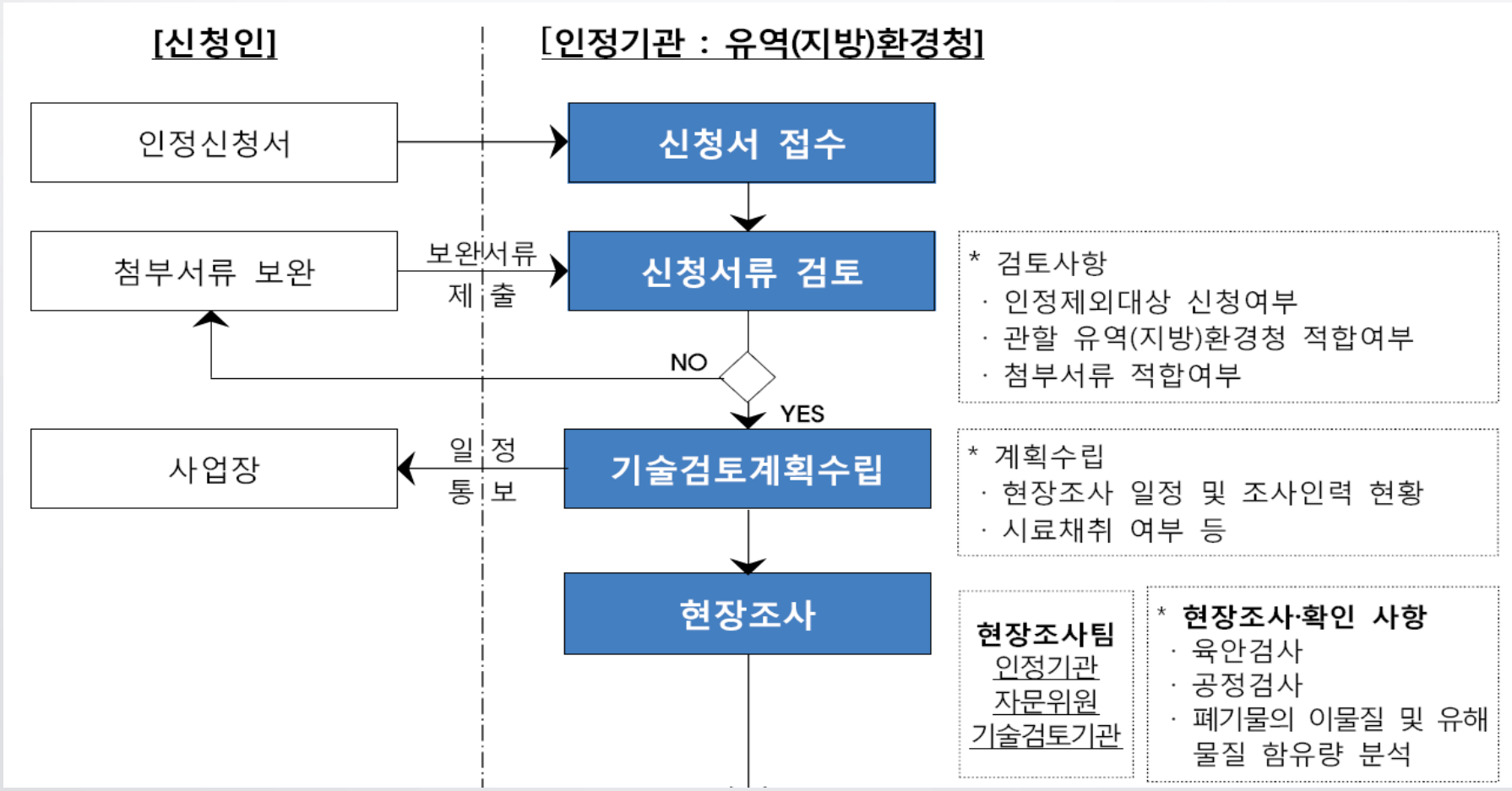
⑦ 순환자원의 기준을 지속적으로 준수하기 위한 시설·장비·기술인력 등 관리 체계를 갖출 것

⑧ 폐기물의 순환이용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용도나 방법, 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 적합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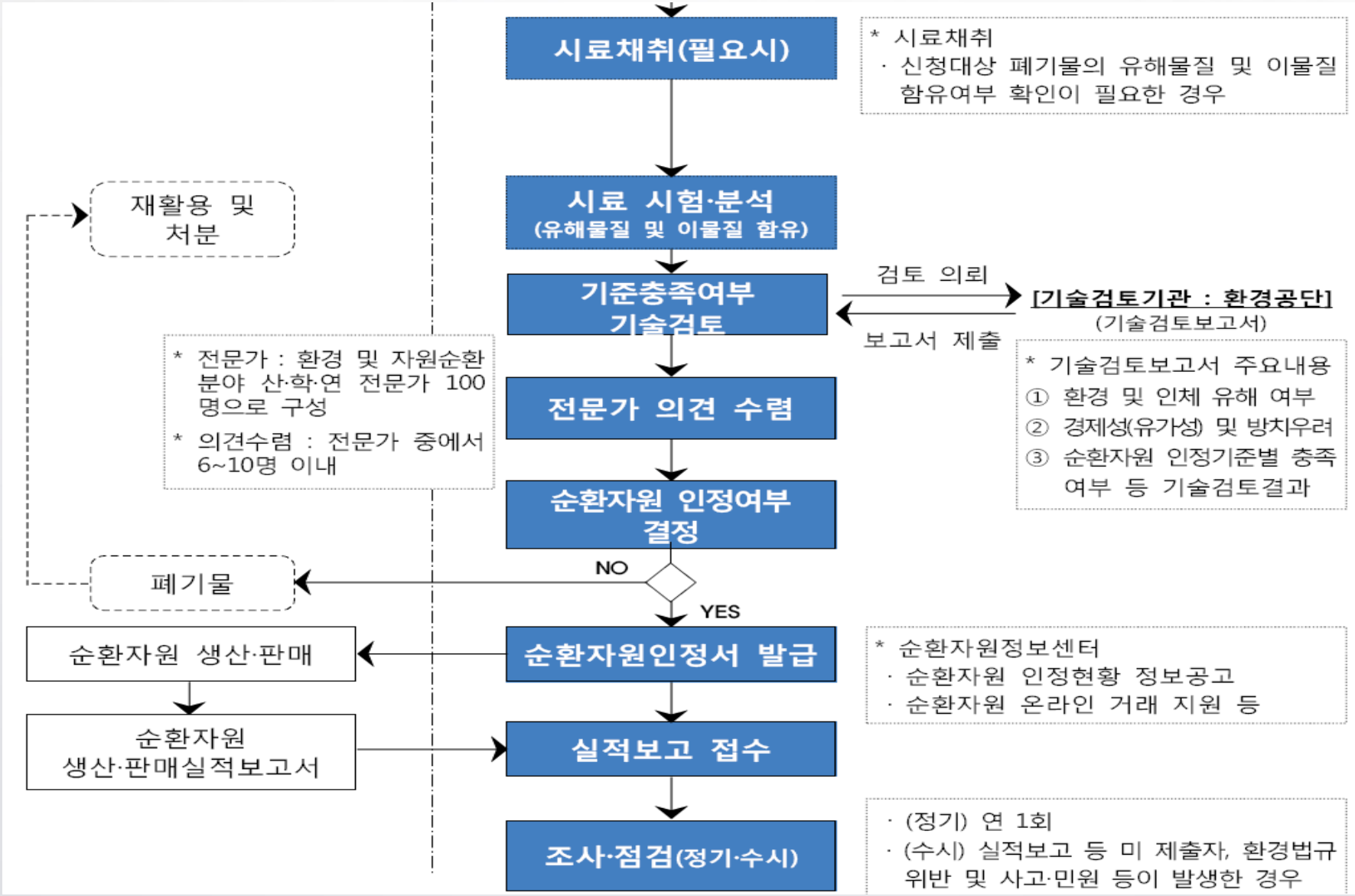
3-1. 순환자원 인정절차

◆ (절차) 신청서 접수, 서류검토,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 등

- 최초 인정 시 3년, 2회 이후에는 5년마다 순환자원 재인정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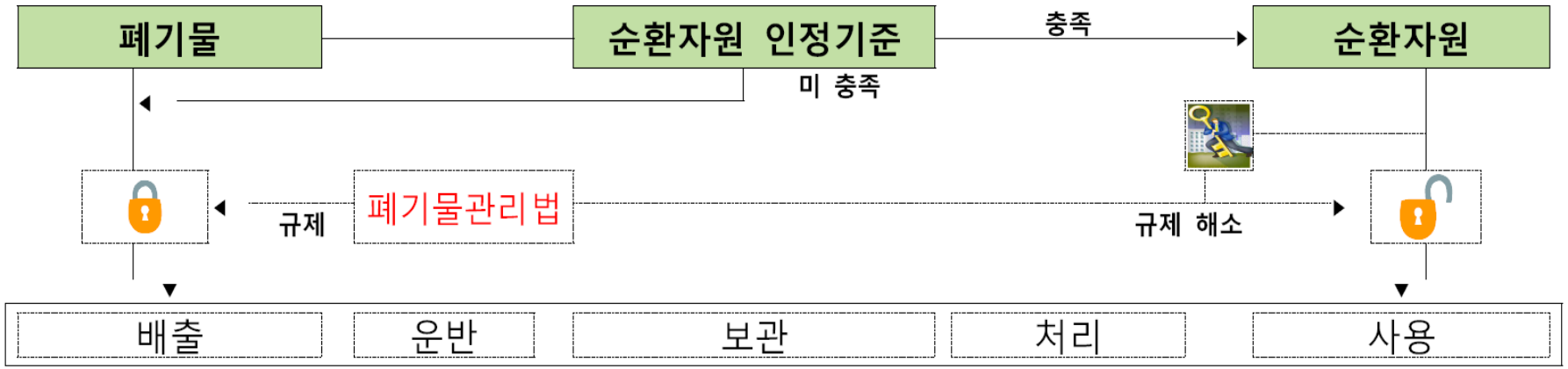
3-2. 순환자원 인정절차


시료채취(필요시)
* 시료채취
· 신청대상 폐기물의 유해물질 및 이물질 함유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시료 시험·분석
(유해물질 및 이물질 함유)
재활용 및 처분
기준충족여부 기술검토
검토 의뢰
보고서 제출
[기술검토기관 : 환경공단]
(기술검토보고서)
* 기술검토보고서 주요내용
① 환경 및 인체 유해 여부
② 경제성(유가성) 및 방치우려
③ 순환자원 인정기준별 충족 여부 등 기술검토결과
* 전문가 : 환경 및 자원순환 분야 산·학·연 전문가 100명으로 구성
* 의견수렴 : 전문가 중에서 6~10명 이내
전문가 의견 수렴
순환자원 인정여부 결정
NO
폐기물
YES
순환자원 생산·판매
순환자원인정서 발급
* 순환자원정보센터
· 순환자원 인정현황 정보공고
· 순환자원 온라인 거래 지원 등
순환자원 생산·판매실적보고서
실적보고 접수
조사·점검(정기·수시)
· (정기) 연 1회
· (수시) 실적보고 등 미 제출자, 환경법규 위반 및 사고·민원 등이 발생한 경우

3-3. 순환자원 인정절차

◆ (혜택)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관련 규제에서 배제

-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배출.운반.보관.처리.사용 등 관련 규제에서 배제**되며 자유롭게 유통·사용가능



* 폐기물 배출자 신고	* 수집운반 허가	* 폐기물 처리업 허가
*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 방치폐기물 이행 보증에 관한 사항	* 방치폐기물 이행 보증에 관한 사항
* 인수인계시 전산입력	* 폐기물 인계 등에 관한 사항	* 폐기물 인계 등에 관한 사항
* 폐기물 처리서류 기록, 보존	*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정기검사 등)	*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정기검사 등)
	* 폐기물 적정 보관	* 폐기물 적정 보관
	* 각종 보고 및 행정사항 이행여부(교육 실시 등)	* 각종 보고사항 및 행정사항 이행여부(교육 실시 등)

PART 03

폐기물 처분부담금 제도

1. 부감금제도 개요
2. 부과대상 및 납부의무
3.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 및 감면
4.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절차

1. 폐기물 처분부담금 제도 개요

◆ 도입배경

-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처리의무자**(자치단체 및 사업장 폐기물배출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여 최대한 재활용되도록 유도하는 제도**

  *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 폐기물을 순환이용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 징수

◆ 법률근거

-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폐기물처분부담금)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17조부터 제24조**(부담금 감면기준 및 이의신청)
- **자원순환기본법 제22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

2-1.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대상 및 납부의무

◆ 부과대상 폐기물(법 제21조 제1항)

- **생활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 사업장 폐기물 외의 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 사업장 일반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 **건설폐기물**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 폐기물

* 제2조제1호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 공사로 5톤 이상

*** 모든 폐기물이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대상 단, 재활용금지대상 폐기물은 제외**

*** 재활용금지대상 폐기물(법 13조의2) : 폐석면, PCB, 폐농약, 의약품, 의료폐기물 등**

2-2.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대상 및 납부의무

◆ 부담금 납부의무자(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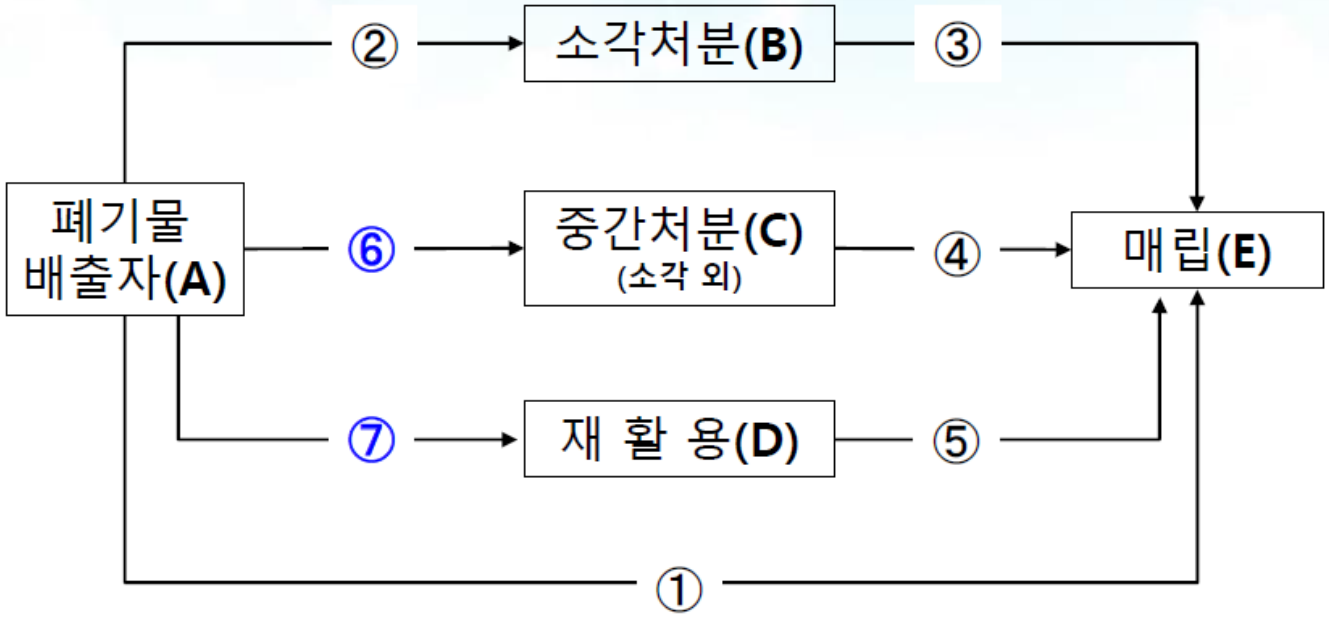
- 생활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 사업장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에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 자가 및 위탁처분(소각 · 매립)하면 납부의무자에 해당

<참고> 폐기물처리체계에 따른 납부 의무자



①,② : **소각 또는 매립 처분**하는 폐기물배출자(A)가 **납부의무자**에 해당

③,④,⑤ : **새로운 폐기물배출자가 되는** B,C,D가 **납부의무자**에 해당 (공동처리 포함)

⑥,⑦ : **재활용** 또는 **소각외 중간처분**일 경우 A는 **납부의무자**에 **해당**되지 **않음**

3-1.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 및 감면

◆ 폐기문 처분부담금 산정

- 처분(소각·매립)한 폐기물의 양에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과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를 곱하여 산정

폐기물처분부담금 (원)	=	**처분한 폐기물량** (kg)	×	**산출기준** (원/kg)	×	**산정지수**

- **처분한 폐기물량 :** 위탁 또는 자가처리한 폐기물 유형별 **소각 또는 매립한 중량** (kg)

  * 정기 신고 : 전년도 처분량(1월 ~ 12월), 수시 신고 : 당해년도 처분량 (공사시작일 ~ 폐기물처분 종료일)

- **산출기준 :** 폐기물 유형별 요율 (「시행령」 별표6)

- **산정지수 :** 최초의 적용연도(2018)를 1로 하고, 그 다음 연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에 **가격변동지수**(환경부장관 고시)를 곱한 값

<참고>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출기준(시행령 별표6)

폐기물 유형		요율	
		매립하는 경우	소각하는 경우
생활폐기물		kg당 15원	kg당 10원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제외)	불연성	kg당 10원	-
	가연성	kg당 25원	kg당 10원
건설폐기물		kg당 30원	kg당 10원

- **(불연성폐기물)** 무기성오니류, 폐합성고분자화합물(열경화성수지로 한정), 광재류, 분진류, 폐주물사 및 폐사, 폐내화물, 폐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고화 처리물, 폐촉매(금속성 폐촉매로 한정),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광물류로 제조된 것만 해당), 폐석고 및 폐석회, 연소잔재물, 폐석재류, 폐패각, 폐토사류, 폐콘크리트류,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금속류, 폐유리류, 폐타일, 폐전주, 폐소화기류, 폐전지류, 폐흑연가루

  - **불연성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의 **요율** 적용

- **(가연성폐기물)** 가연성폐기물은 불연성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배출 단계에서부터 두 가지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분리가 어려운 폐기물(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혼합되어 배출되는 잔재물을 포함한다) 중 시험분석 결과 가연성 물질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 미만인 경우에는 불연성폐기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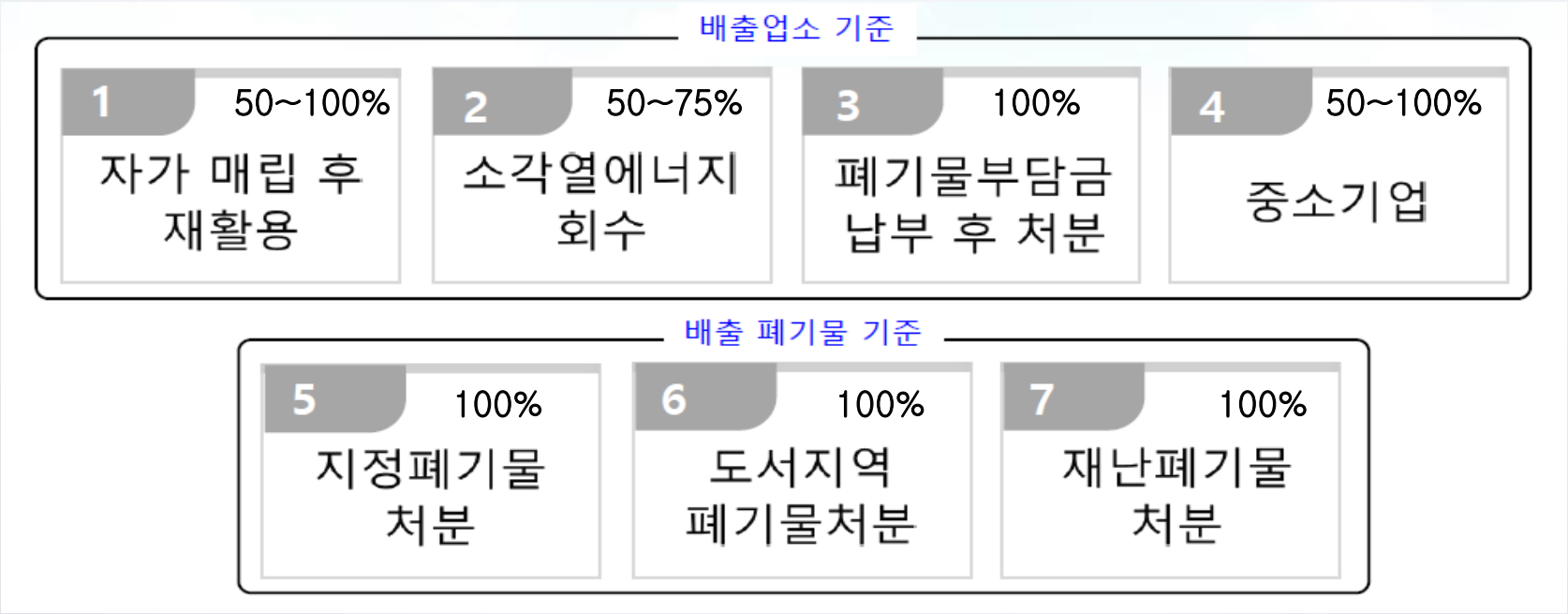
  - 가연성폐기물과 불연성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가연성폐기물 요율** 적용

Q 가연성 물질의 함유량 5% 미만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매 분기별로 작성한 **폐기물시험분석결과서 기준**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4조)

3-2.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 및 감면

◆ 폐기문 처분부담금 감면 기준

- 7개의 감면기준 중 2개 이상에 동시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의 종류 별로 해당 기준 중 감면 비율이 가장 높은 기준만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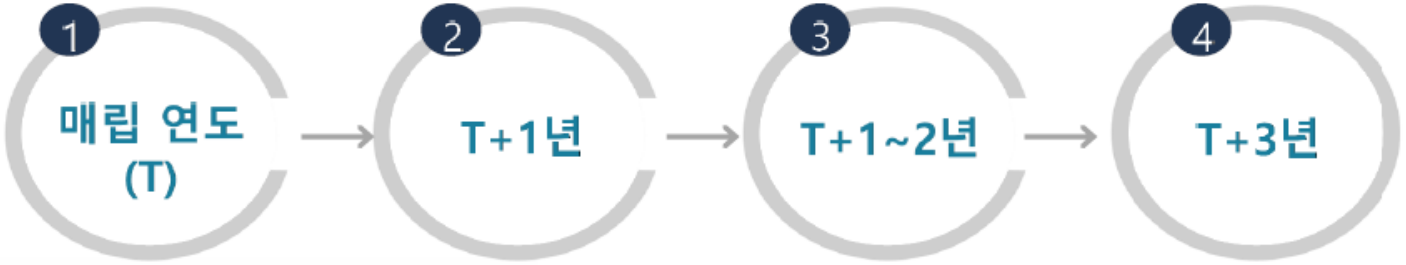
*** 100%감면기준에 해당하여도 부담금신고 및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함.**

1 자가 매립 후 재활용

[감면대상]	[감면기준]	[감면비율]
1) 폐기물 매립지를 **직접 조성**하고 향후 **재활용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매립**하는 경우로써 2) 자가매립시설*에 **폐기물을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하지 않고 별도로 매립**한 후 **2년**이 지난 날이 속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 해당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부과 대상자	폐기물을 매립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재활용**한 경우	100%
	폐기물을 매립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1일부터 2년 이내 **재활용**한 경우	50%

*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직접 설치·운영하는 폐기물매립시설

<자가 매립 후 재활용 감면 적용 시 부담금 부과시기 및 금액>



- 매립 연도 말일까지 재활용 되지 않고 남아있는 폐기물에 대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50% 부과
- 매립 후 3년 동안 재활용 되지 않고 남아 있는 폐기물에 대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50% 부과

Q 모든 자가매립지가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매립지 직접 조성, 재활용 위한 매립 등 1), 2)에 해당하여야 함.

2 소각열에너지회수

[감면대상]	[감면기준]	[감면비율]
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발생한 소각열에너지를 **50퍼센트 이상** 회수하여 이용하는 **소각시설**에서 처분하는 부과 대상자(**배출자**)	소각열에너지를 50%이상 60%미만 회수하여 이용하는 경우	**50%**
	소각열에너지를 60%이상 75%미만 회수하여 이용하는 경우	**60%**
	소각열에너지 75%이상 회수하여 이용하는 경우	**75%**

[소각열에너지 회수효율 산정]

1) 폐기물 소각하는 과정의 **회수에너지 총량**을 **투입에너지 총량**으로 나눈 비율로 산정하되, 세부 산정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2) **2기 이상의 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처분하는 경우 **개별 소각시설별 소각열에너지 회수**효율을 **소각량**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산정
3) 2)에 불구하고 하나의 부과·징수 대상자의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후 운영하는 **2기 이상**의 **소각시설**에서 처분하는 경우로서 개별 소각시설별로 처분한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증명하는 경우에는 **각 소각시설별**로 **소각열에너지 회수효율**을 산정

Q 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아니라 **에너지를 회수하는 소각시설에서 소각 처분하는 배출자가 감면 대상**
(소각시설에 대해 연중에 에너지회수를 인정받은 경우 인증 기간을 고려 산정)

3 폐기물부담금 납부 후 처분

[감면대상]	[감면기준]	[감면비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품·재료·용기에 대해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한 부과 대상자**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해당하는 제품·재료·용기**를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	**100%**

4 중소기업

[감면대상]	[감면기준]	[감면비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연간 매출액 120억원 미만**인 부과 대상자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경우	**50%**

- 상기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을 등록**한 자는 소각 또는 매립한 폐기물의 연간 합계가 **300톤 미만**인 경우로 한정

5 지정폐기물 처분

[감면대상]	[감면기준]	[감면비율]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부과 대상자**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	**100%**

6 도서지역폐기물 처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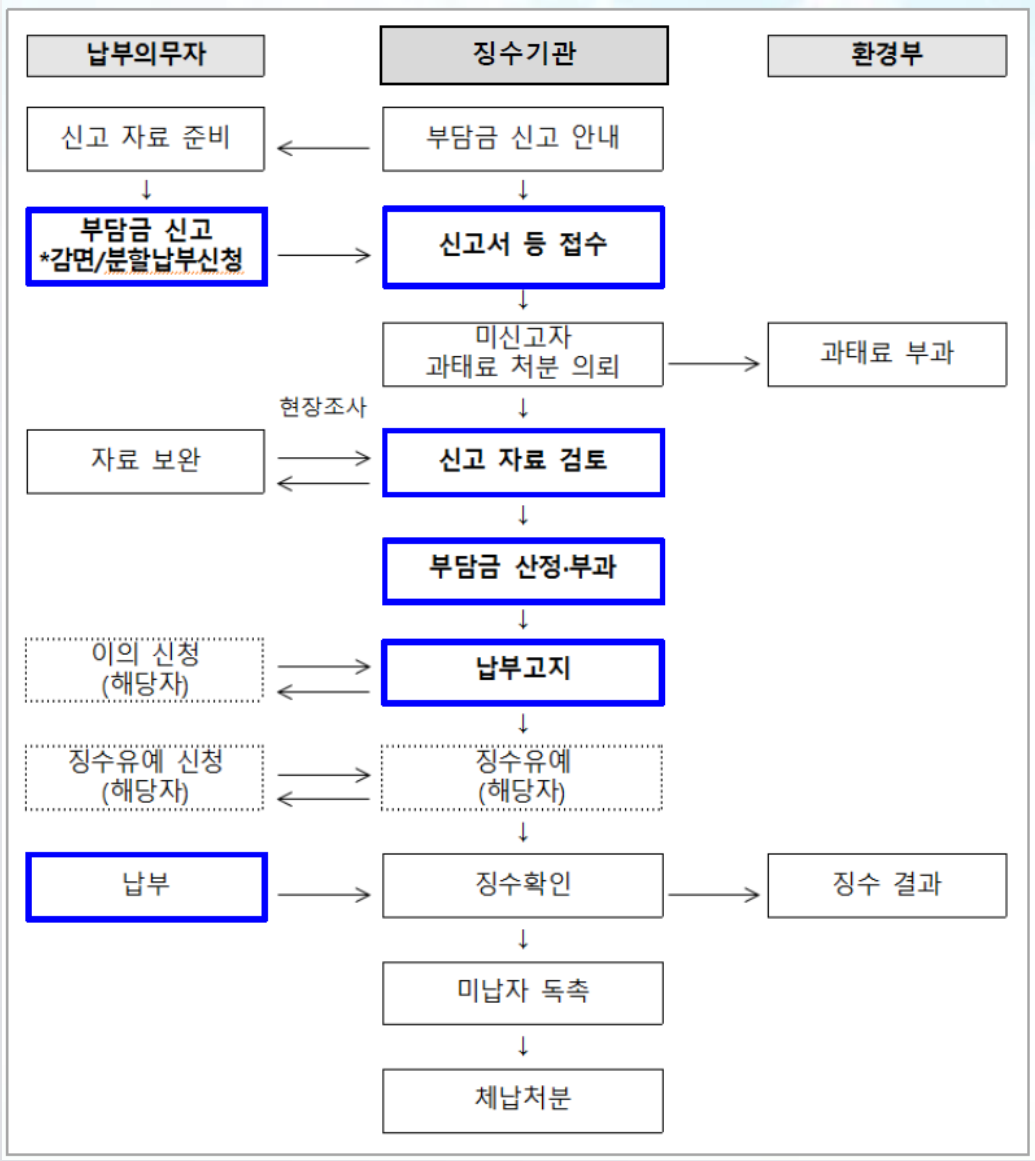
[감면대상]	[감면기준]	[감면비율]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해당 도서 내에서 소각 또는 매립하는 부과 대상자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에서 **발생 폐기물을 도서 내에서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	**100%**

* **도서 :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

7 재난폐기물 처분

[감면대상]	[감면기준]	[감면비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부과 대상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1)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난복구계획 또는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	**100%**
	2) **1) 이외의 경우**로서 부과·징수 대상자가 재난으로 인해 발생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 (재난피해 증명서류를 발급받은 경우)	

4-1.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절차



[징수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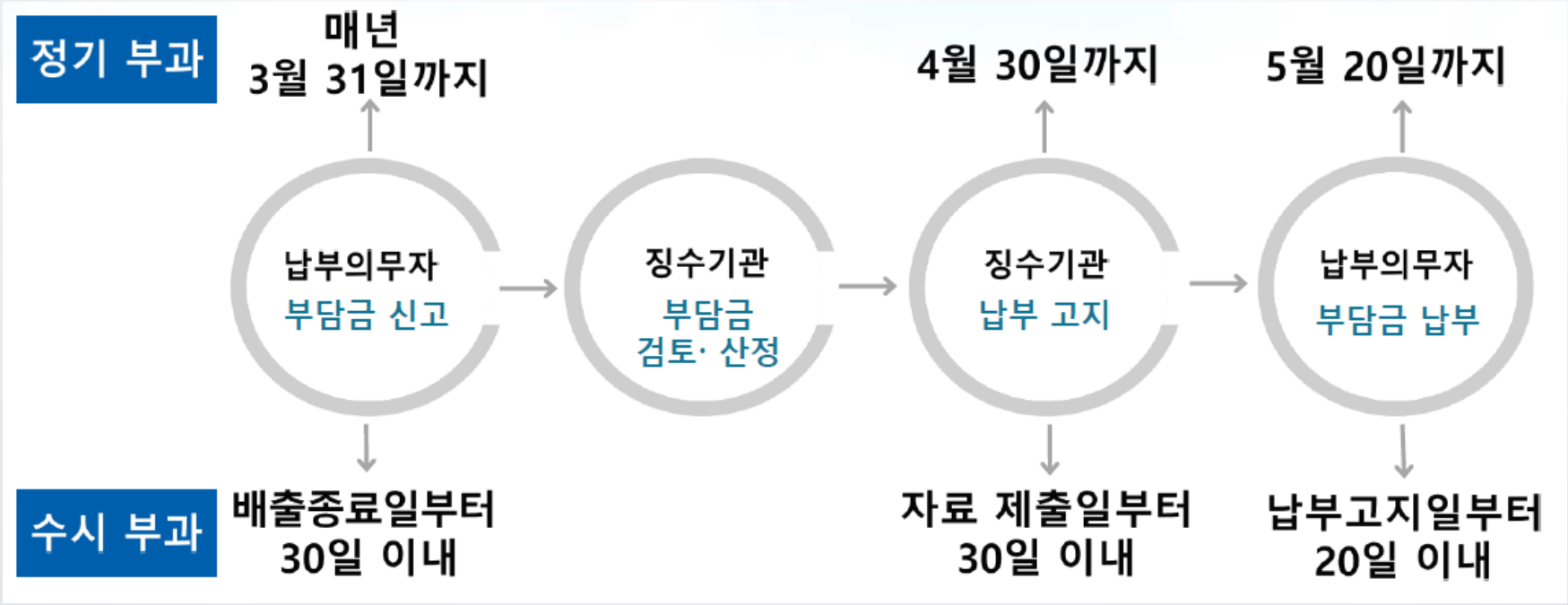
- 생활폐기물 : 시도지사
- 사업장폐기물 : 한국환경공단

[부과종류]

- 정기부과 : 매년 주기적으로 폐기물을 배출 및 처분하는 납부의무자에 대한 부과
- 수시부과 : 건설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연도 중 폐기물 배출이 종료 되는 납부자에 대한 부과

4-2.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절차

[부과·납부시기]



* 온라인신고 www.budamgum.or.kr 접속, 감면신청, 분할납부신청 등

감사합니다

- 문의처
  - 폐기물유해성정보자료작성 가이드 : 금강청 홈페이지>정보마당>환경관리과
  - 유해성정보자료작성, 순환자원인정제도 : 042-865-0738
  - 지정폐기물처리계획(변경)확인, 폐기물 배출요령 : 042-865-0736
  -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Budamgum.or.kr) : 032-590-5082~5088, 5091
  - Allbaro시스템 운용 : 042-9392-2314, 2317